

검 토 보 고 서

2022. 9. 26.(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원)

목 차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1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6
 위탁 동의안
3.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12
 위탁 동의안

검 토 보고 서

(전문위원 김동원)

1. 안 건 명

- 안전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92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년 9월 5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13일

3.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 사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
- 나. 상위법령 반복내용 및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2. 5. 26. ~ 6. 15.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제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2.06.28.)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2. 9. 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92호로 제출되어, 2022. 9.13.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개정 취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반복, 중복,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한 법령명과 근거 조항의 표기 등 미비점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 정의는 삭제 하였으며

제3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8호에 따른”으로

제4조 제1호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제2호~제6호는 삭제

제5조, 제6조 삭제

제7조 제1호, 제2호의 지도감독 의무 조항을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를 삭제 하였고

제15조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운영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근거 조항 표기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종합의견

-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법령 정비기준 및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에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반영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19.>

8. 기타자료(비용추계서, 관계법령)

가.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김소라
연 락 처	02-3153-8984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김동원)

1. 검토안건

- 안건명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2. 9. 5.
- 회부일 : 2022. 9. 13.(의안번호 : 22-93)

3. 제출이유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방식(재계약)
-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4) 위탁시설 현황

구 분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재지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동 1층(망원동)	
규모	226.23㎡	
시설 설비	사무실(1), 상담대기실(1), 집단상담실(1), 개인상담실(3), 교육실(1)	
센터전경 및 위치		

※ 現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0. 1. 1.~2022. 12. 31.(3년)
- 수탁기관: (학)명지전문대학

5) 소요예산 : 총1,500,850천원(국비 10%, 시비 22%, 구비 68%)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합 계	1,500,850	1,219,600	115,290	165,960	
2023년	494,250	400,500	38,430	55,320	인건비 상승률 반영
2024년	500,250	406,500	38,430	55,320	"
2025년	506,350	412,600	38,430	55,320	"

* 인건비 산정 : 센터장1명, 팀장2명, 팀원3명(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운영비 내역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등

<참고>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2022년	484,000	385,250	38,430	60,320	

다. 추진일정

- '22. 10.17.~10.28. : 민간위탁운영체 선정방침 수립 및 신청서접수
- '22. 11. 4.~11.10.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22. 11. 18. : 위탁계약 체결

5.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17조 제3항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항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위기청소년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사무는 학)명지전문대학과의 위탁기간이 '22.12.31.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김동원)

1. 검토안건

- 안건명 :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2. 9. 5.
- 회부일 : 2022. 9. 13.(의안번호 : 22-94)

3. 제출이유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위탁 운영이 2022. 12. 19. 만료될 예정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재계약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의 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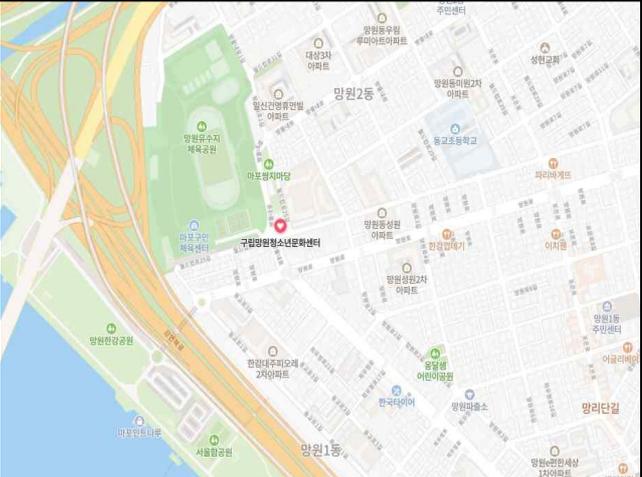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기간 : 2022. 12. 20. ~ 2025. 12. 19.(3년)
-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방식(재계약)
-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4) 위탁시설 현황

구분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소재지	월드컵로 25길 164(망원동)	
규모	연면적 959㎡(지하1~지상3층)	
수용인원	210명	
전 경		위치도
		

※ 現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19. 12. 20.~2022. 12. 19.(3년)
- 수탁기관: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5) 소요예산 : 총1,312,400천원(전액구비)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합 계	1,478,360	964,400	348,000	165,960	
2023년	488,320	317,000	116,000	55,320	인건비 상승률 반영
2024년	492,720	321,400	116,000	55,320	"
2025년	497,320	326,000	116,000	55,320	"

* 인건비 산정 : 관장1명, 부장1명, 정규직 5명, 계약직 3명(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운영비 내역 : 일반·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참고>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2022년	428,550	312,550	116,000	60,320	

다. 추진일정

- '22. 10.17.~10.28. : 민간위탁운영체 선정방침 수립 및 신청서접수
- '22. 11. 4.~11.10.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22. 11. 18. : 위탁계약 체결

5. 관계법령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위탁사무는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와의 위탁기간이 '22.12.19.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 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 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